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정 : 2012.06.01

개정 : 2015.10.01

개정 : 2016.10.01

개정 : 2020.03.01

개정 : 2022.10.01

개정 : 2023.10.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안전법 제5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8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으로서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등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1., 2020.03.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학과 및 부서에 적용되며 본교에 소속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 라 한다.) 및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이하 “수시출입자” 라 한다.)에게 적용된다.<개정 2015.10.01., 2020.03.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방사선” 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원자력법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방사선발생장치” 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원자력법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방사선관리구역” 이라 함은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선량, 허용농도, 허용 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 ④ “방사성폐기물” 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 ⑤ “피폭방사선량” 이라 함은 일정기간 사람이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하되, 자신의 전신을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 방사선량

은 제외한다.

⑥ “선량한도” 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0.01.>

⑦ “표면방사선량률” 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거리에서 측정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개정 2015.10.01.>

⑧ “방사선작업종사자” 라 함은 원자력이용 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 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01.>

⑨ “수시출입자” 라 함은 방사선 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01.>

⑩ “개인선량계” 라 함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01.>

⑪ “판독특이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0.01.>

1.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2.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제2장 방사선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본 대학교 내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와 “방사선안전관리팀” 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학과별 사용관리책임자와 사용관리자를 각각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운영한다.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5.10.01., 2020.03.01.>

제5조(직무) <삭제 2015.10.01.>

제5조의2(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①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3.01.>

② 위원회 위원은 총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학과장,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학과의 사용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약간 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한다.<개정 2020.03.01., 2022.10.01., 2023.10.16.>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과 동일하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회의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방사선안전관리업무 담당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10.01.>

제5조의3(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기능)<신설 2015.10.01.>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장해방지와 방사선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이용시설의 재해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안전관리팀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조치 불이행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5.10.01.>

제5조의4(방사선안전관리팀) ①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방사선안전관리팀은 팀장 1인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약간 명의 교직원과 조교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된다.

③ 직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10.01.>

제5조의5(방사선안전관리팀의 기능) 방사선안전관리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방사선안전관리업무 수행
2.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및 변경 안 작성

3. 방사선안전관리 예산의 수립 및 지출
4. 학과사용관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
5.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6.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8.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9. 방사선관리구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10. 방사선안전관리 수시보고, 분기보고 및 변경사항 신고 업무 주관<신설 2015.10.01.>

제5조의6(방사선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사업체의 대표이며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은 허가사용자인 총장이 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15.10.01.>

제6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직무수행)<삭제 2015.10.01.>

- 제6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지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개시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한다.
- ② 방사선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총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 ③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학과 의 학과장과 사용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 사용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 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본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⑧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허가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

구역 출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⑨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설 2015.10.01.>

제6조의3(사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사용관리책임자는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학과의 학과장이 당연직으로 지정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팀의 지원을 받아 해당 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용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에서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내용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기록과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사용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의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시건장치를 관리한다. <신설 2015.10.01.>

제6조의4(사용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사용관리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교과과목을 지도하는 교수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팀의 지원을 받아 해당 실험실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한 사고 및 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사용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

제6조의5(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작업종사자로 등록한 교직원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사용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업무에 종사하며 방사선안전관리상의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건강검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10.01.>

제6조의6(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2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1.>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03.01.>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제6조의7(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03.01.>

1.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서명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다. <신설 2020.03.01.>

제3장 취급기준

제7조(사용기준)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만 한다.
- ②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방사선량률은 1주당 400마이크로 시버트 이하로 하고 그 경계에는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③ 방사선작업에 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피폭선량계 및 보호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 ④ 방사선 작업 전후와 작업 중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측정한다. <개정 2015.10.01.>
- ⑤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오염된 물건의 무단 반출을 엄금한다.
- ⑥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설의 시건장치 해제 열쇠는 방사선 안전 관리자와 각 시설 및 장치 관리 종사자가 보관 관리한다.

- ⑦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습교육 시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통제에 따라 실습교육을 시행한다. <신설 2015.10.01.>
- ⑧ 실습교육 시 방사선 조사는 팬텀을 대상으로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이 없는 인체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절대 금한다. <신설 2015.10.01.>

제8조(구매절차) ①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교의 구매 절차에 의하여 구매한다. <개정 2020.03.01.>

-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 관련서류 사본을 5년간 보관·유지한다.

제4장 방사선 장애방지 조치

제9조(방사선 관리구역)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사선 관리구역을 설정한다.

1. 외부 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인 곳
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3. 물체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4.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 <신설 2015.10.01.>

제10조(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피폭선량의 관리) ① <삭제 2016.10.01.>

1. <삭제 2016.10.01.>
2. <삭제 2016.10.01.>
3. <삭제 2016.10.01.>

② <삭제 2016.10.01.>

③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신설 2015.10.01.>

1.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신설 2015.10.01.> <개정 2016.10.01.>
2.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될 때 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신설 2015.10.01.>

3. 사업자는 관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신설 2015.10.01.>

4. 안전기술원의 피폭방사선량 확정 및 관리에 의하여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으로 확정된 관독특이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로 건강검진 결과와 장애관련 사항 그리고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및 조치내용과 관리 현황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신설 2016.10.01.>

④ 종사자와 수시출입자 및 그 외 사람에 대한 선량한도는 [별표1]에 의한다.<신설 2016.10.01.>

제12조(개인감시) ① 모든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게 외부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지급하여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한다.<개정 2016.10.01.>

② 외부피폭선량 측정 주기는 개인선량계 서비스 제공자의 절차에 따른다.

③ 개인 피폭선량은 수시로 종사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측정) ① 방사선 관리구역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방사선측정기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01.>

1. 방사선량률의 측정 :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 방사선 관리 구역의 경계 및 사업소등의 경계

2. 오염상황의 측정 : 작업실, 오염검사실, 배기, 배수설비의 배기구 및 배수구, 배기감시설비가 있는 곳, 배수감시설비가 있는 곳,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정은 작업 개시 전에 측정하며 방학 동안에는 측정하지 않는다.<개정 2020.03.01.>

③ 방사선량률 측정위치는 검사실 외부 표면으로부터 10cm 거리에서 측정한다. <신설 2020.03.01.>

제14조(기록) ① 방사선작업 및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5.10.01.>

1. 사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일자, 종류, 수량 및 대수

2.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3.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 개인피폭선량 측정 장부) <개정 2015.10.01.>

4.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종사자 건강진단 장부) <개정 2015.10.01.>

5.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 훈련장부)
 6. 방사선량률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률 측정장부)
 7.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교정 기록 <신설 2015.10.01.>
 8.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기록사항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5 년간 보존한다. 다만, 개인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은 영구보존한다. <개정 2015.10.01.>
- ③ <삭제 2015.10.01.>
- ④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기록, 피폭선량기록, 교육훈련기록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유지한다. <신설 2016.10.01.>

제15조(교육훈련)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5.10.01>

1. <삭제 2015.10.01.>
 2. <삭제 2015.10.01.>
 3. 신규교육의 기본교육은 8시간이상 실시하며 직장교육은 4시간 이상 실시 <신설 2015.10.01.>
 4. 정기교육의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은 각각 매년 3시간 이상 실시 <신설 2015.10.01.>
 5. 기본교육은 별도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이수 <신설 2015.10.01.>
 6.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교육하거나 별도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신설 2015.10.01.>
- ② <삭제 2015.10.01.>
- ③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5.10.01.>
1.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 방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 <신설 2015.10.01.>
 2.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제외 <신설 2015.10.01.>
 3. 교육을 받은 수시출입자는 제외 <신설 2016.10.01.>
- ④ 수시출입자는 3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6.10.01.>
- 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기본교육을 받은 해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기본교육은 면제가 되나 직장교육은 실시한다. <신설 2020.03.01.>

제16조(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및 방사선장해 검사)<개정 2016.10.01> ① 종사

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5.10.01.>
 2. <삭제 2015.10.01.>
 3. 직업력 및 노출력 <신설 2015.10.01.>
 4.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신설 2015.10.01.>
 5. 임상검사 및 진찰 <신설 2015.10.01.>
 - 가. 임상검사 :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 나.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6.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현미경 검사(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 <신설 2015.10.01.>
-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 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음. <개정 2015.10.01.>
 3.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 피폭방사선량이 유효선량한도인 연간 50밀리 시버트를 넘거나 5년간 100밀리 시버트를 초과한 때 <개정 2015.10.01.>
- ③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실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6.10.01.>

제17조(보건상의 조치) 제16조의 건강진단결과, 방사선장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장애 또는 우려가 되는 점이 없어질 때까지 피폭시간의 단축, 업무의 전환, 작업방법의 변경, 방사성물질의 제거, 기타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8조(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제15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3.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9조(보고)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보고한다. <개정 2015.10.01.>

- ① <삭제 2015.10.01.>
- ② <삭제 2015.10.01.>

- ③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5.10.01.>
- ④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은 매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방사선안전재단에 보고한다. 단, 개인피폭선량계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판독업체가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1.>
- ⑤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분기 경과 1개월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한다. <신설 2015.10.01, 개정 2016.10.01.>

제20조(장비의 보정 등) ① 방사선안전관리 장비는 장비제작사가 정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교정 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비제작사가 정하는 검·교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제21조(위험시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 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또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개정 2020.03.01.>

1. 방사선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방사성물질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3.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때 <개정 2020.03.01.>
5. 방사선 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방사성 물질 등의 폐기, 운반에 있어 장애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기타의 장애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

제22조(직무의 특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모든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동령, 동규칙, 동고시에서 정한 바와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선량한도

선 량 한 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단위 : 밀리시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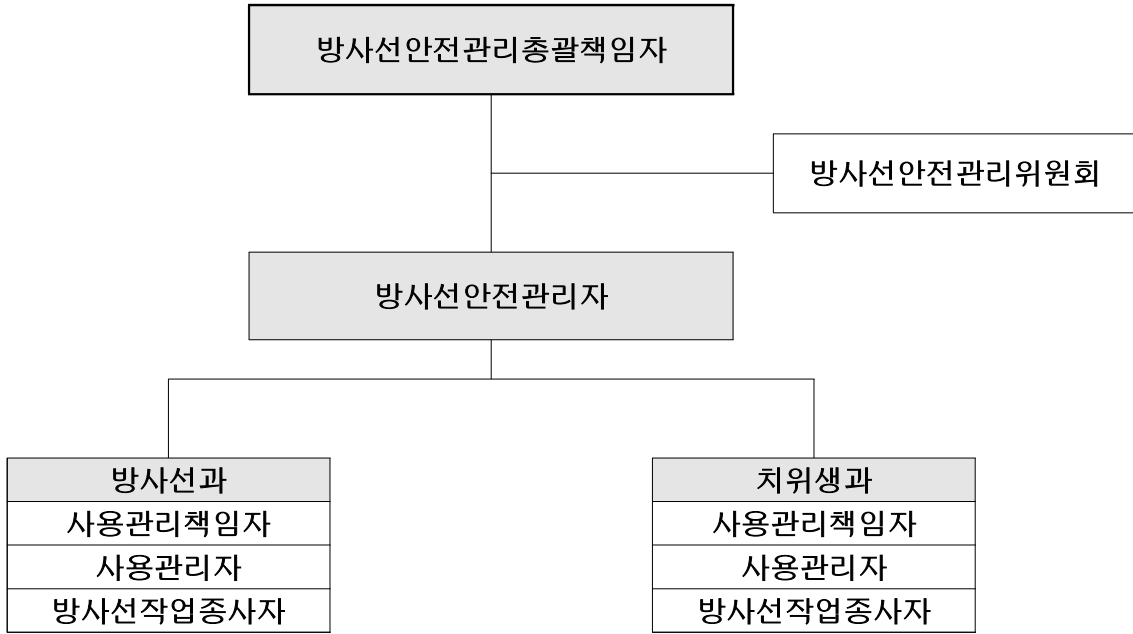
구 분	유효선량한도	등가선량한도	
		수정체	손·발 및 피부
1.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연간 150	연간 500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18시 미만인 사람	연간 6	연간 15	연간 5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	연간 1	연간 15	연간 50

비고

1. “선량한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2.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선량한도는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제2호에서 “운반종사자”란 방사선관리구역 밖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호 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원반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3호의 유효선량한도값에도 불구하고 피폭방사선량의 합을 5년간 평균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을 유효선량한도로 한다.
5. 제1호의 유효선량한도란 및 비고 제4호에서 “5년간”이란 1998년 1월 1일부터 기산되는 5년마다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2]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체계

◆ 방사선안전관리 조직도



◆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